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6)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주)이비엠리더(남동균)		
	주 소	우11162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18-48 (설운동)		
	전화번호	02-3494-2901	팩스번호	02-3495-2905
신청인(2)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353	팩스번호	031-910-0361
신청인(3)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윤영중)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전화번호	02-746-0179	팩스번호	02-746-0103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93호
- 명 칭 :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
-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단열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기능이 있는 외장재 고정장치(Thermal Break Fastener)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건식 설치공법으로,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석재, 금속·비금속패널, 고밀도목재, EIFS 등) 설치시 외장재 고정장치(Fastener) 때문에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저감시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고, 결로 현상이 감소되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T.B. Fastener)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석재, 금속패널, 고밀도목재) 건식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가. 보호기간 : 2016.07.13. ~ 2030.07.12.(14년)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